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6. 2.27.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 공무원(군인 등)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근신)에 대한 효력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 (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나. 군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명문화 (안 제40조)

「군인사법」 제57조의 징계 종류인 “근신”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항으로 신설 반영

대통령령 제 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군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군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4(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략) <u><신 설></u>	<u>인 경우</u>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u>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군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군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u> <u>③ 제1항 또는 제2항</u> ----- ----- ----- ----- ----- ----- ----- ----- ----- ----- -----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u> <u>③ (생략)</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291